

I.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은 공정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는 대상자의 보험료 월 이용한도액과 식사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로 하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며 개인 부담금은 20%임(기초수급자, 의료혜택자 등 경감대상자들은 관련 기준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정함)
		12%	보험공단이 88%이며 개인 부담금은 12%임
		8%	보험공단이 92%이며 개인 부담금은 8%임
	식사재료비	12,600원/일	1식 4,200원으로 하루 3식(수발포함)
	간 식	1,800원/일	1일 1회
	상급침실료	15,000원/일	1인실-30,000원 2인실-15,000원

II.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급여제공자와 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 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 호, 간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바) 요양 및 생활 서비스 등 계약에 따른 보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Ⅲ. 계약의 해제

가)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 2 조 제 6 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Ⅳ.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요인 발생시 1주간 통보 → 상호계약사항검토 → 재계약 → 확인 후 이행한다.

Ⅴ.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고나리,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 훈련
- 5. 시설급여 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의 이용료 지침에 따라 요양원에 신고 된 금액으로 한다.
- 6. 기타 유료나 무료대상자는 계약에 따른다.

VI.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 및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시설이용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VII.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다)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병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수급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④ 위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를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방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VIII.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IX.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